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11. 19 선고 2023가단8531 판결 [보증채무금]

---

## 전 문

###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

담당변호사 정연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이창규

변론 종결 2024. 9. 10.

판결 선고 2024. 11. 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딸 C는 2019. 4. 1. D로부터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9. 9.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각서의 피고 이름 'B'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이름 옆에 서명이 되어 있다.

금액: 150,000,000원

지급기일: 2019. 9. 30.

본인은 D의 위 금액 원금 1차 100,000,000원, 2차 50,000,000원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반드시 지급한다.
2. 지급기일이 경과된 경우에 본인의 재산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가압류 하는데 동의한다.
3. 만약 지급기일까지 지불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연대보증인(아버지) 소유의 땅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즉시 변제한다.

2019. 4. 1.

서약인: C

위 내용을 지키겠습니다. B

나. D는 2021. 5. 5. 이 사건 각서에 따른 C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채무자 C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각서로써 보증채무를 부담한 바 있으므로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보증채무자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다.

## 3. 판단

### 가. 관련 법리

- 1)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관여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 문제이지만,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566 판결 등 참조).
- 2)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민사소송법 제358조).

###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갑 제1호증(지불이행각서) 중 '위 내용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 옆의 피고 명의의 서명만 누군가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 법원의 감정인 서한서는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이 피고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의 서명이 피고 또는 피고로부터 수권을 받은 사람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달리 피고가 직접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배예선